서대문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직위	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서대문구 보건소장	(임기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개방형4호)	1명	2년	-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추진 - 보건기획, 인사·예산·회계, 보건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 - 방역대책 수립, 전염병 예방 접종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구강위생, 가족계획, 방문간호,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시행, 성인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 성과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최종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자로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학력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민 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우대조건 : 전문의 자격 소지자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40시간(1일 8시간)

○ 연봉액

- 경력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 4호	-	70,490천원

※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9.(화) ~ 10. 7.(수) <09:00~12:00 / 13:00~18:00, 중식시간제외>
- 접 수 처 :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팩스·택배·퀵서비스·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대리접수시 응시자 신분증 사본과 접수자 신분증 필수 지참)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우편환) 동봉 제출

※ 우편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2-330-1058)에게 접수 확인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수입증지 판매처 : 구청 1층 민원여권과, 수입증지 가격 : 10,000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2026. 10. 12.(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13.(화) 예정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6. 10. 15.(목) 예정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1.(수) 예정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시험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한 자격 및 경력 등 임용자격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시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결정

-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심사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 : 10,000원 (서대문구청 1청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접수처에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환 등으로 해당금액 동봉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7)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첨부8)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9)' 추가 제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외국어능력 증명서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 제출 자료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 인쇄(양면인쇄 금지)**하고 **스테이플러·띠지 등 사용 금지**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02-330-1058)